

배출시설의 정의와 허가대상 범위

(마지막회)

배출시설	배출시설 용어의 정의 및 규모
• 부침처리시설 (Decorative treatment facilities)	•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낸 후 남은 실과 번데기를 분리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2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정련시설 (Decoloring facilities)	• 섬유 및 동제품을 염색 또는 표백하기 전에 섬유 중에 잡물을 없애고 섬유의 특성을 발휘시켜 완전한 염색이나 표백을 할 수 있도록 셋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순환식 조화시설	• 일담배에 습은유지를 위해 증기와 물을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뿌리면서 찌는 시설로 용적합계 5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습점시설	• 원료 및 제품(일담배)에 적정한 온도,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기, 물 등을 뿌려 부드럽게 하여주는 시설로 용적합계 5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침향시설	• 일담배의 맛을 보완하기 위해 향료탱크에 담구어 함수율을 높이는 시설로 용적합계 5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향료조제시설	담배향료를 조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써 면적합계 2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수냉식 절단시설	• 고체상태의 물질을 기계, 기구 등으로 절단시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이용하는 시설로 동력합계 5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성형가공시설 (Molding facilities)	• 일정한 틀에 혼합액을 넣어 일정한 형체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형체에 인공을 가하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수양생사시설 (Cement, lime and plaster mfg. facilities)	• 일정한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서 물체가 견고하도록 물속에 담그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약품처리시설 (Chemical treatment facilities)	• 원료에 화학약품을 넣거나 제품에 유약등을 바르는 시설로 용적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연삭시설	• 고체상태의 물질의 표면을 매끈하게 하거나 일정한 모양이 되도록 깎는 시설로 동력합계 5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윤활유교환시설 (Lubricating replacement facilities)	• 자동차에 윤활유를 주입하거나 교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독크길이 합계 2m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* 독크시설 길이의 합계라 함은 윤활유를 교환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크시설 길이의 총합계를 말한다.

이상덕
<원주환경지청지도과>

배출시설	배출시설 용어의 정의 및 규모	배출시설	배출시설 용어의 정의 및 규모
• 세차(장)시설 (Car washing facilities)	• 철도차량 및 자동차를 물로 씻는 시설로 면적 합계 2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	• 돈사시설 (Pigs facilities)	• 돼지를 가두어서 기르는 축사시설로 면적 합계 1,40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특별청소 지역에서는 면적 합계 70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다만 특별청소 지역에서는 면적 합계 70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면적 합계라 함은 가두어 기르는 축사시설 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.
• 정비시설 (Maintenance facilities)	• 철도차량 및 자동차와 부품을 수선하는 시설로 면적 합계 2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면적 합계라 함은 수선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포함하여 정비장 평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.	• 우사시설 (Cattle house facilities)	• 고기소 및 젖소를 기르는 축사시설로 면적 합계 1,20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다만 특별청소 지역에서는 면적 합계 600m ² 이상의 축사시설 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.
• 채탄시설 (Coal mining facilities)	• 무연탄, 갈탄 등을 채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, 기구 등으로 생산능력 8,000톤/월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	• 마사시설 (Horse house facilities)	• 말을 가두어서 기르는 축사시설로 면적 합계 1,20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특별청소 지역에서는 면적 합계 60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면적 합계라 함은 가두어 기르는 축사시설 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.
• 선광시설 (Preconcentration facilities)	• 채굴한 광석을 유용물과 무용물로 가려내는 시설로 작업장 면적 합계 2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* 작업장 면적 합계라 함은 선광기가 설치된 시설을 포함하여 작업장 평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.	• 회력발전시설	• 불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모든 시설로 발전능력 합계가 시간당 10만kw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사진제판시설 (Plate making facilities)	• 종이, 천 등에 문자, 그림 등을 인쇄하는 판으로 사진판, 동판, 석판 등을 말한다.	• 폐수저장시설	• 수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기 전 폐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용적 합계 1m ³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(법 제 15조의 2 제 1항 단서의 규정)
• 연마시설 (Grinding facilities)	• 고체상태의 물질을 매끈하게 만들거나 일정한 모양이 되도록 하는 시설로 동력 합계 3HP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	• 정수시설	• 하천수, 지하수 등을 저작탱크에서 여과지, 약품 등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시설로 정수능력 100m ³ /일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• 자동식필름 현상시설 Automatic film development facilities)	• 노출한 필름에 생긴 잡상을 적당한 환원제로서 처리하여 가시의 상을 만드는 자동식 시설로 시설 합계 1 셋트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	• 이화학 실험시설	• 어떤 물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이·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관찰하는 시설로 면적 100m ²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여기에서 면적 합계라 함은 실험기구, 실험용 약품보관 시설은 물론 실험에 사용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 내부의 바닥면적의 총합계를 말한다.
• 자동식인화 지현상시설 (Automatic print paper development facilities)	• 현상된 필름의 상을 인화지에 현상하는 시설로 시설 합계 1 셋트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	• 폐가스세척시설 또는 세정식 집진시설	• 제품의 제조 또는 폐기물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용액용제 따위의 액체를 써서 세척하는 시설로 용수량 또는 분무량 0.1m ³ /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.
• 1) 병원시설 (Hospital facilities)	• 병자를 진찰, 치료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인 응급처치실, 주사실, 수술실을 말하며 병상 80개 이상의 시설에 한 한다. 병상 80개 이상이라 함은, 입원실의 환자수용 능력으로 침대 시설인 경우는 침대수, 온돌인 경우는 수용 가능 인원수를 합하여 80인 이상의 수용 시설을 말한다.	• 특정시설	• 용액, 용제 따위의 액체를 써서 먼지를 끌어 모으는 시설로 용수량 또는 물분무량 0.1m ³ /시간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 • 구분 “1~25” 외의 포함 시설로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 0.1m ³ /시간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을 말한다.
• 2) X-RAY 필름현상시설 (X-Ray film development facilities)	• 노출한 X-RAY 필름에 생긴 잡상을 적당한 약품으로 처리하여 가시의 상을 만드는 시설로 1 셋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.	• 일반시설	•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로 1m ³ /시간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.

참고문헌 : 1. 국립환경연구소 :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기준

제정에 관한 연구(1984. 12)